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15서식] <개정 2018. 11. 28.>

권리·의무 승계신고서

처리기간
7일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신고인
(승계인)</td><td>상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사업자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성명(대표자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업장 소재지</td><td colspan="4">(전화번호:)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신고내용</td><td rowspan="3">피승계인</td><td>상호</td><td></td><td>사업자
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성명
(대표자)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업장
소재지</td><td colspan="3">(전화번호: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승계대상</td><td>업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신고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승계사유</td><td colspan="4">[ ] 양도 [ ] 사망 [ ] 합병</td></tr>
<tr><td>승계 연월일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기타 참고사항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/table>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□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/ 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. 권리·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※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·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,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